

이 추록은 2024 『CORE(코어) 세법학』 제10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1. 정오사항

면	행		중전의 내용	고칠 내용
	좌측	우측		
123	하 5		연결가능법인에	연결가능법인에
309		상 16 ~ 17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176.4원/kg	다만, 2024년 8월 31일까지는 193원/kg
		하 9 ~ 8	2024년 6월 30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 5		
		하 2		
310	상 1			
370		하 11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43% ㉡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44%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
371	상 1		비율	비율.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를 말한다.
7월16일 업데이트	408	하 14	① 거주자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및 연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